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저작권법상의 성격 Place-shifting of TV Content by the Use of Slingbox and the Copyright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Youn-Ha Cho(hanrover@ewha.ac.kr)

요약

시청이동 및 기기이동 이용 판결논리를 토대로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성격을 공정이용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니 판결과 RIAA 판결에 기초하면 장소이동 시청은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냅스터 판결을 적용시킬 경우, 장소이동 시청은 슬링박스 구매자에게만 저작물이 노출되므로 공정이용이지만, 장소이동 기능의 공유는 저작권침해 책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반면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는 저작권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시간 및 공간이동 기능의 공정이용을 부인한 소니 사건의 2심과 MP3.com 판결에 따르면, 장소이동 시청은 공정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콘텐츠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플랫폼 확장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단말이 저작권자의 후속시장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쟁점은 결국 기술혁신과 저작권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체의 법적 책임 분석기준인 “혁신매체의 항변”을 제안해 본다.

■ 중심어 : | 저작권 | 슬링박스 | 장소이동 | 시간이동 | 공간이동 | 방송콘텐츠 |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gal liability of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by the use of the Slingbox. The place-shifting of TV contents is fair use because it is a non-commercial private use based on the relevant case law regarding time-shifting and device-shifting such as Sony, RIAA and Napster. But the sharing of place-shifting function is likely to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nd place-shifting may not be fair use based on the cases which denied fair use of 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because the consumers' convenienc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opyright law. Place-shifting is un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tential market for TV contents because it presents lucrative new platforms to disseminate TV contents to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However it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because various devices can be the follow-up marketplaces of the copyright holders of TV contents. This study proposes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new doctrine to analyze liability of innovative media.

■ keyword : | Copyright | Slingbox | Place-shifting | Time-shifting | Space-shifting | TV Content |

I. 서론

기술혁신은 TV프로그램의 수용방식에 커다란 변화

를 주었다. 1950년대 원격조정기의 보급으로 TV채널변경이 용이해졌고, 1970년대 VCR이 대량 판매되면서 프로그램을 녹화했다가 편리한 시간대에 시청하는 시간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58-B00046).

접수일자 : 2013년 07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7월 16일

수정일자 : 2013년 07월 08일

교신저자 : 조연하, e-mail : hanrover00@ewha.ac.kr

이동(time-shifting) 시청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함께 VCR의 카세트테이프를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로 대체한 DVR과 DVD 재생장치로 인해 시간이동 시청기능이 더욱 향상되었다[1].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원격으로 실시간 시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기가 등장하면서[2], TV프로그램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소이동(place-shifting) 시청기기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개발된 슬링박스(Slingbox)로서,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연결된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미디어 유통 기술이다[1][3].

이처럼 시간이동과 장소이동 기기는 TV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시청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복제 또는 전송 기술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능성이란 법적 이슈를 야기한다. 복제기술을 이용한 시간이동 시청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해석이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슬링박스와 같이 기술적으로 일시적 저장과 전송이 수반되는 장소이동 기기의 이용이 저작권법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4]. 장소이동 시청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은 슬링박스를 연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기기 제조사는 슬링박스를 통한 실시간 시청이 개별 이용자의 이용에 입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 이용의 경우에도 슬링박스 이용자들이 ID 공유를 통해 다른 가정이나 지인에게 장소이동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사적복제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작권 논란의 소지가 생기게 된다[5][6].

시간이동 개념은 기존 연구나 논의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비해, 장소이동의 경우 학문적인 접근이 미비한 실정이다. 장소이동 개념은 기기제조자들이 마케팅 목적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을 뿐,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의가 시도되지 않았다[6]. 국내에서 슬링박스 등의 장소이동 기기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으로, 언론학에서는 슬링박스를 이용한 N-Screen 서비스의 저작권 분쟁의 쟁점에 주목한 김희경·이재호의 연구[5]와 법학에서는 현행 법상 슬링박스의 장소이동 기능에 대한 규율을 다룬 오병철의 연구[7], 슬링박스와 저작권 관련 쟁점을 제기한 이진태의 연구[8]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서도 슬링박스의 장소이동과 관련하여 저작권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소수[3][6][9][12]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장소이동 기기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 사법부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슬링박스 관련 국내의 판례는 물론이고 시간이동 및 기기이동 관련 국내 판례의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장소이동 기기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법리를 찾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슬링박스와 같은 장소이동 기기를 이용한 TV프로그램 시청이 공정이용의 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문제로 하여, TV프로그램 시간이동 시청 및 음악콘텐츠 기기이동(device-shifting) 이용의 공정이용을 다룬 미국의 판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판례분석에서 나타난 공정이용 판단의 근거를 토대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슬링박스에 대한 기술적 이해

슬링박스는 원래 스포츠 경기 관람의 목적에서 탄생한 것으로, 2005년 미국의 슬링미디어가 개발한 미디어 기기이다[7]. 이것은 TV, DVR, DVD 재생장치 등의 영상매체에 연결되어, 영상매체의 콘텐츠를 인터넷망이 연결된 단말기인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고 채널변경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3][6][11][13][14].

슬링박스는 이용자의 방송회선과 연결된 네트워크 저장장치인데, 방송회선을 통해 들어온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용자가 외부에서 요청

하면 인터넷망을 통해 외부 이용자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 등)로 방송콘텐츠를 제공(전송)하는 형태이다[5]. 서비스 방식은 첫 번째 단계에서 슬링박스로 들어오는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다[8]. 슬링박스는 전송하는 프로그램의 녹화와 재생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13]. 이것은 방송신호를 한 번에 1개의 단말기에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one-to-one' 또는 'me-2-me' 연결만 지원하는데, 이와 같은 기술적 제약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제약으로 볼 수 있다[6].

슬링박스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7년으로, 국내에 출시된 제품인 '슬링박스 프로'는 고화질 TV를 비롯, DVD, 감시카메라 등 4개의 채널로 다양한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다. 당시 국내 미디어 환경은 웹하드와 P2P 등의 범람으로 실시간 방송을 TV외의 매체로 시청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슬링박스에 대한 수요도 미미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슬링박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N스크린과 같이 다양한 단말을 통한 실시간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스토리지(storage) 기능이 부가되면서 단말기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5].

한편 미국에서 개발된 슬링박스 이외의 장소이동 기기로는 TiVoToGo, SageTV Placeshifter 등이 있다[9][15]. 일본에서는 소니(Sony)가 개발한 로케이션프리TV, Nagaon Syotne K. K.의 마네키TV, Nihon Digital Kaden K. K.의 로쿠라쿠II 등을 지적할 수 있다[6][9][10]. 국내의 경우는 Cup TV, 뽀TV 등이 슬링박스와 유사한 기기이다.

이와 같은 장소이동 시청기기는 일종의 개인용 방송 중계장치로서, 방송사업자에게는 가 시청권을 획기적으로 넓혀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유통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16]. 또한 가정에서는 셋탑박스 추가설치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집안 어느 곳에서도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3][6] 소비자가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장소이동에 대한 개념적 논의

TV프로그램의 시간이동 시청은 콘텐츠 저장기능과 시청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편의성이 주요 특징인 VCR[17]이나 DVR 등에 프로그램을 녹화, 저장했다가 방송시간과 다른 시간에 시청하는 과정[3][18][19]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장소이동은 소비자들에게 어느 곳에서든 어느 단말기를 통해서든 방송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15], 시청 장소를 통제하는 개념이다.

장소이동 개념은 슬링박스와 같은 장소이동 시청기 기들이 등장하면서 방송 콘텐츠 이용에 국한해서 논의되고 있다. Hildebrandt[20]는 장소이동을 'TV프로그램을 소비자가 최초로 수신하는 곳과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시청하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 수신 위치 변경에 초점을 두고 정의하였다. Talar[3]는 '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든 컴퓨터나 기타 인터넷 연결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을 통해 가정의 TV수상기나 PVR의 영상을 스트리밍해주는 기술'로 설명함으로써 기술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렸다. 시청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한 Isoda[9]는 '서비스제공자가 TV프로그램을 수신, 녹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전송하면, 고객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또 Russell[6]은 장소이동 기기들의 특성, 이용 및 관련법을 분석함으로써 기능적인 관점에서 개념정의를 시도했는데, '소스에서 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기로 멀티미디어의 신호를 이동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장소이동은 기술이나 법학 분야에서 때로는 공간이동(space-shifting)이란 용어와 혼용되고 있어 개념의 불명확성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연구[3][6][9]에서는 공간이동을 장소이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다른 연구[12]에서는 기기이동과 장소이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Isoda[9]는 일본의 일부 논문에서 마네키 TV나 로쿠라쿠 II와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원격전송 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해 "공간이동"이란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파일공유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들이 “시간이동”과의 비교를 통해 서비스가 공정이용임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공간이동이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공간이동은 원래 콘텐츠를 저장했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로 콘텐츠를 복제해서 이용하는 행위인 기기이동이나 미디어이동(media-shifting)을 의미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방송콘텐츠의 장소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디지털녹음과 전송기술이 확산되면서 가능해진 기기이동을 의미하는 공간이동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한 콘텐츠를 다른 물리적 공간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기기로 옮겨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21]. 즉 카세트플레이어나 MP3 재생장치와 같이 저작물을 더 휴대하기 편한 매체로 옮기기 위해, 음악앨범을 카세트테이프에 복제하거나, 합법적으로 구매한 CD나 iTunes과 같은 소스로부터 음악이나 영상 클립을 자신의 하드드라이브에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의미한다[22].

정리하면, 기기이동이 콘텐츠를 저장하는 기기의 휴대성이 강조된 개념이라면, 장소이동은 다른 장소에서 직접 콘텐츠를 전송받아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용위치의 이동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공간이동은 좁게 보면 장소나 위치이동 또는 기기이동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더 넓은 범위에서는 장소이동과 기기이동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III. 시간이동 및 기기이동 기기의 공정이용 판결논리

1. TV프로그램의 시간이동 시청과 공정이용

VTR에 처음으로 공정이용을 적용시켰던 미국의 소니 판결(1984)¹⁾에서 연방대법원은 시간이동 시청을 목적으로 VCR에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 저장하는 행위는 비 상업적이고 사적복제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시간이동”이 국민이 소유한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료로

시청하도록 초대받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이것은 TV시청인구의 확대 효과가 있고, 그런 시청률 증가는 광고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에서는 시간이동 시청이 일상적이고 소비성이 강하며 생산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productive use)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동 사건의 하급심인 연방항소법원의 다수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냅스터(Napster) 판결(2001)²⁾에서 MP3 파일의 다운로드가 변형적인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 Madison[23]은 소니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된 시간이동이 ‘순수한’ 의미의 사적이용이라면, 반대의견이 제기한 생산적인 목적은 ‘전통적인’ 의미의 공정이용 목적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어쨌든 소니 판결은 가정에서의 시간이동 목적의 아날로그 방송TV 녹화가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방송콘텐츠 녹화의 저작권 침해 논쟁은 셋톱박스에 장착된 하드 드라이브가 저장매체인 디지털 개인용 비디오녹화기 PVR의 등장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2001년 10월, 4개 TV프로그램 제작사가 PVR인 리플레이TV의 제조 및 공급 사업자의 간접침해 책임을 주장하는 소송³⁾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법원이 새로운 디지털기술에 아날로그 VTR과 다른 기준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였다[24]. 그러나 소송 중 리플레이 TV 제작사가 파산하고, 이를 인수한 디지털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었던 광고 건너뛰기 녹화기능을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송이 취하되었다[24-27].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PVR이 내장된 수상기가 등장했지만, 사법부 해석이 부재하며 학문적 논의도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조연하·김미라의 연구[28]에서는 PVR은 시간이동이 주 이용목적이고 방송저작물의 기기이동 이용이 활발하지 않지만, 디지털기술에 기반을 둔 특성상 DVD 등의 다른 미디어로 복제해서

1)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464 U.S. 417(1984).

2)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 (9th Cir. 2001).

3)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v. Replay TV(C.D.Cal. 2001).

다량을 소장하고 파일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활발해지면,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시간 이동과 공간이동의 개념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제기하였다. 조연하의 연구[29]에서도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는 사적복제 요건인 이용범위의 한정성과 비영리성을 고려할 때, 공간이동 목적의 파일전송 기능의 사용과 저작물 유형이 유료방송 저작물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mley[30]는 녹화파일의 인터넷전송이 문제가 된 리플레이TV 4000은 중앙에 서버가 없으며, 배포 양과 대상자 수가 한정되었고, 다른 기기이용자에게 무료로 녹화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냅스터 판결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V프로그램의 녹화는 네트워크형 복제기기의 등장으로 각 가정에 녹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원격지 프로그램 저장장치인 RS-DVR을 이용하여 인터넷만 연결되면 쉽게 방송콘텐츠를 녹화해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재생해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31][32]. 미국의 케이블비전(Cablevision) 사건⁴⁾에서 영화사와 TV네트워크 사는 RS-DVR 서비스를 하는 케이블비전이 자사의 장비를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가입자들에게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시간 이동 기능이 아니라 재방송(rebroadcasting) 또는 중계 방송에 해당되며, 이는 저작권 직접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RS-DVR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TV 프로그램의 녹화와 재생은 '사적이용'에 해당하며 저작권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31-34]. 이 판결의 함의는 네트워크 DVR을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 재생행위에서 복제 주체가 개별 이용자이며, 서비스제공자는 복제를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 이용자 요청에 따라 녹화된 프로그램을 단지 전달한 것으로 공중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이용자의 시간이동 시청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2. 음악콘텐츠의 기기이동 이용과 공정이용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로 소니 판결에서 시간대이동 개념이 사용되었듯이, 일련의 음악콘텐츠 관련 판례에서는 기기이동을 의미하는 공간이동 개념이 사용되었다[9]. RIAA 사건⁵⁾은 미국 레코드협회인 RIAA가 최초의 mp3 재생장치인 리오를 생산한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가 오디오가정녹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리오는 그것에 저장된 디지털 오디오 파일을 복제하거나 컴퓨터 또는 인터넷 등에 전송하거나 업로드 시키는 기능은 없지만,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기기로 옮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이미 저장된 파일을 들고 다니거나 공간이동을 목적으로 단순히 mp3 재생장치에 복제하는 것은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리오는 디지털 음반의 녹음이 아니라, 이미 이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휴대하거나 공간이동을 목적으로 단순히 복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음악콘텐츠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며, 그런 복제는 오디오가정녹음법의 목적과 완전히 부합하는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였다. 연속복제 제어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mp3 재생장치 시판의 오디오가정녹음법 위배여부가 쟁점이었고, 기기이동의 공정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은 아니었지만, 판결의 논리는 mp3재생장치를 이용한 기기이동이 공정이용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슬링박스와 같은 장소이동 시청 기기 및 서비스의 공정이용 판단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공간이동 기기를 이용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UMG Recordings 사건⁶⁾에서 변화를 보인다. 이 사건은 녹음된 mp3 파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인 MP3.com의 저작권 직접침해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다. MP3.com은 2000년 1월 회원이 CD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느 곳에서든 저장, 감상할 수 있는 "My.Mp3.com" 서비스를

4)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 536 F.3d 121 (2nd Cir. 2008).

5) Recording Indus. Association of America v. Diamond Multimedia Sys., Inc., 180 F.3d 1072, 1079 (9th Cir.1999).

6) UMG Recordings, Inc. v. MP3.com, Inc., 92 F. Supp. 2d 349 (S.D.N.Y. 2000).

개시하였다. Mp3.com은 회원에게 CD를 저장해주는 '기능적 설비'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지 않게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한 녹음 파일을 회원에게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공정이용 판단기준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검토에서, 비록 MP3.com이 CD에 수록된 음악 녹음물을 감상할 수 있는 변형적인 '공간이동'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단지 적법하지 않은 복제물이 다른 매체를 통해 재전송되고 있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전화를 통해 라디오 방송을 재전송하거나 텔레비전통신사가 뉴스장면을 다른 언론사에 재전송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일련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작권침해행위를 통해 가능했을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MP3.com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의 취지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이며,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의 편의성 제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은 소니 사건의 향소심⁷⁾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범위에 편의성,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접근력 향상이란 이용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서비스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저작물 복제에 해당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판시함으로써, 저작물의 디지털 녹화를 통한 공간이동 기능에 대해 RIAA 판결(1999)과 다르게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냅스터 사건(2001)은 미국의 주요 음반회사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mp3 음악파일을 자신의 하드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P2P서비스를 제공한 냅스터를 상대로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을 물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냅스터는 이용자가 이미 구매한 오디오CD에 수록된 음악을 듣기 위해 mp3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할 때 발생하는 공간이동은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시간이동과 기기이동의 합법성을 인정한 소니 판결과 RIAA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가 이용자들의 복제권, 배포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니 판결과 RIAA 판결의 '이동' 기능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에 손을 들어주었다. 즉 법원은 이전의 두 사건에서는 저작물이 최초 이용자에게만 노출되었으며, 이동방법도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동시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근거로서 사용되었던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의 항변을 냅스터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동 판결은 복제된 음악저작물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기기이동을 의미하는 공간이동이 시간이동과 구별된다고 본 것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공유를 허용한다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결국 법원은 저작물 공유로 인한 영리 목적의 이용가능성과 그로 인한 잠재적 경제효과를 공간이동의 공정이용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음악콘텐츠의 기기이동 관련 사건들은 MP3 저작권 문제를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다루었지만, 각각 인터넷상의 콘텐츠 배포의 저작권침해 문제 해결의 근거를 제시했으며, 방송저작물의 장소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슬링박스의 장소이동 기능은 인터넷연결망을 이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정의 TV수상기나 PVR의 영상콘텐츠를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중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끊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N 스크린 서비스³⁵⁾로 인해 그와 같은 장소이동 시청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소이동은 시간이동 개념을 계승한 개념이기는 해도 디지털 녹화와 네트워크와 같은 기존의 기술들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서비스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찾아볼 수 있다⁹⁾. 따라서 슬링박스를 이용한 장소이동 시청은 기술적으로나 법리상으로도 시간이동 시청과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

7) Universal City Studio Inc. v. Sony Corp. of America, 659 F.2d. 963, 1981.

며, 이에 대한 분석은 변화하는 기술 및 법 환경에서 장소이동 기기 이용의 저작권법적 성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Grokster 판결(2005)의 관점에서 보면, 슬링박스 서비스는 간접침해책임과 유인이론에 따라 저작권책입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직접침해자가 있어야 하며, 이 상황에서 유일한 직접침해자는 소비자이다[12]. 슬링박스를 이용한 TV시청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파악은 곧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저작권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저작권침해 가능성 주장에 대해 슬링박스 이용자는 공정이용 항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슬링박스 이용의 법적 성격은 공정이용이라는 법적 틀 안에서 분석할 수 있다.⁸⁾

먼저 이용의 목적과 성격 기준의 경우, TV프로그램의 시간이동 시청과 음악콘텐츠의 기기이동 이용을 각각 비상업적인 사적이용으로서 공정이용으로 해석한 소니 판결과 RIAA 판결에 기초하면, 슬링박스를 이용하여 방송 콘텐츠를 원거리에서 시청하는 행위는 비상업적인 사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동시에 저작물이 배포되는 공간이동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했던 냅스터 판결을 적용시키더라도, 슬링박스를 이용한 시청은 슬링박스 구매자인 최초 이용자에게만 저작물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복제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슬링박스를 이용한 방송콘텐츠 시청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물리적 공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아닌 단독 수신에 의한 개인적인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⁹⁾ 즉 슬링박스의 구입, 관리, 이용의 주체가 개별 이용자이어야 하며 순수하게 비상업적인 이용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슬링박스 이용의 주체와 범

위가 사적복제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Isoda[9]가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이 각각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할당된 기기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TV방송의 단순한 재송신이 아니라 DVD 레코더나 VCR의 이용과 흡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하나의 가정의 구성원 사이에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슬링박스의 장소이동 기능을 다른 가정과 공유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6]. PVR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방송저작물을 다른 미디어로 복제하거나 파일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이동 이용이 활발해지면, 공간이동의 공정이용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28][29]는 논리가 슬링박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장소이동 기능의 공유와 관련하여 Schnaps[12]는 슬링박스 구매자가 친구와 슬링박스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TV콘텐츠를 시청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 배포, 공연, 사적 영역 등의 개념들이 새롭게 재정의 된다면, 법원이 소비자에게 직접침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SNS서비스에 접속한 친구나 지인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와도 관련된 것으로,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기존의 사적 영역, 배포 등의 개념이 재정의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슬링박스 이용의 적법성은 공적 이용인지 사적이용인지 여부가 관건으로[36], 슬링박스가 수신을 1대로 제한하고 개인적으로 수신한다면 이는 공개적 영역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적 이용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슬링박스를 이용한 방송콘텐츠 시청이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상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한 근거에는 VCR의 시간이동과 마찬가지로 슬링박스의 장소이동 기능도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성 논리는 저작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Mp3.com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의 취지는 소비자 편의성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라는 점

8)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슬링박스를 이용한 시청에 사적복제 조항(제30조)과 더불어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의 적용이 가능하다.

9) 불법복제물의 복제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되지 않음을 명백히 한 최근 판결(서울중앙지판 2008가합968)을 슬링박스 이용에 적용시킨다면, TV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은 문제가 없지만 가정의 PVR 등에 녹화된 영상콘텐츠 이용의 경우는 불법복제물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을 강조하였고, 소니 사건의 2심에서도 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이용의 목적 기준에 소비자의 편의성, 접근력 향상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론에 입각한 장소이동 및 공간이동 기능의 공정이용을 부인한 판결논리에 따르면, 슬링박스를 이용한 장소이동 시청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보호 못 지 않게 저작물 이용의 편의도모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일본 마네키TV 사건의 지적재산고등재판부 판결(2008)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서는 이용자의 적법한 사적 이용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조건 등의 제공을 통해 기기나 서비스 이용자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행위가 위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5].

슬링박스를 통해 이용하는 저작물인 TV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창의성을 요구하는 영상저작물의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 전체 또는 상당한 양이 장소이동을 통해 이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정이용 판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슬링박스를 이용한 장소이동 시청이 방송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이다. 1대 1 수신으로 범위를 제한한 슬링박스의 기술적 특성상, 방송콘텐츠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슬링박스의 장소이동 기능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더 많은 개인용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콘텐츠 플랫폼의 확장, 더 나아가서 방송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반면 다양한 단말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의 후속시장에 해당되므로 저작물의 잠재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입 유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판매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결과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사적복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5]. 결국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시청이 공정이용인지는 시청의 주체와 범위가 주요 판단요건이지만, 공중 배포, 사적 영역, 저작권법상 이용자 편의성 등의 요소에 대한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 기술발전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의 편의 도모에 가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고려도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금지해야 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없을 뿐 아니라, 방송콘텐츠 이용의 효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의 혁신기술을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남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소이동 시청의 법적 쟁점은 결국 기술혁신과 저작권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Lemley[30]가 제시한 “혁신매체의 항변(innovative medium defense)”을 제안해 보는데, 이것은 새로운 매체의 법적 책임을 분석하고 저작권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형량하는 기준으로 소비자의 자율성 향상, 무한 복제와 배포의 방지 능력,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수익, 긍정적 소비문화 조장 등의 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L. Lapan, "Network Television and the Digital Threat," *UCLA Entertainment Law Review*, Summer, pp.343-393, 2009.
- [2] 최정열, "지상파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 pp.131-152, 2011.
- [3] J. Talar, "My Place or Yours: Copyright, Place-Shifting, & the Slingbox: A Legislative Proposal," *17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pp.25-50, 2007.
- [4] C. Walker, "A La Carte Television: A Solution To Online Piracy?," *CommLaw Conspectus*, pp.471-494, 2011.
- [5] 김희경, 이재호, "N-Screen 시대,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시각: 슬링박스의 공중송신권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9호, pp.211-232, 2012.
- [6] A. Russell, "Placeshifting, the Slingbox and

- Cable Theft Statutes: Will Slingbox Use Land You in Prison?," 81 Temple Law Review, pp.1239-1275, 2008.
- [7] 오병철, "슬링박스의 place-shifting에 대한 법적 규율: 전기통신기본법과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 pp.59-79.
- [8] 이진태, "슬링박스(Slingbox)와 저작권 관련 쟁점(1)", SW 지적재산권동향, 제27호, 2007.
- [9] N. Isoda,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Placeshifting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7 Washington Journal of Law, Technology & Arts, pp.149-207, 2011.
- [10] D. Rivers, "Paying for Cable in Boston, Watching It on a Laptop in L.A.: Does Slingbox Violate Federal Copyright Laws?," 41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pp.159-192, 2007.
- [11] S. Sathyanarayana, "Slingbox: Copyright, Fair Use, and Access to Your Television Programming Anywhere in the World," 25 John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pp.187-216, 2007.
- [12] A. Schnaps, "Do Consumers Have the Right to Space-shift, As They Do Time-Shift, Their Television Content?," 52 Seton Hall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17, pp.51-92, 2007.
- [13] M. Bartley, "Slingsing Television: A New Battleground for Technology and Content Holders?," IDEA-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Vol.48, No.4, pp.535-559, 2008.
- [14] B. Bechis, "Professional Sports Broadcasting and the Slingbox: Profitability Through License, Not Litigation," Willamette Sports Law Journal, Vol.6, Issue1, pp.17-27, 2009.
- [15] T. Parcher, "The face and fiction of Grokster and Sony: Using factual comparisons to uncover the legal rule," 54 UCLA Law Review, pp.509-546, 2006.
- [16] 최진원, "개인용 방송중계장치에 대한 법적 고찰: 지상파방송신과 방송콘텐츠 유통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09년, 봄호, pp.26-46, 2009.
- [17] L. Henke & T. Donohue, "Functional displacement of traditional TV viewing by VCRowner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29, No.2, pp.17-21, 1989.
- [18] Jan Van den Bulck, "VCR-Use and Pattern of Time Shifting and Selectivit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3, No.3, pp.316-326, 1999.
- [19] M. Levy, "Home Video Recorders: A User Survey,"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0, No.4, pp.23-27, 1980.
- [20] T. Hildebrandt, "Unplugging the cable franchise: a regulatory framework to promote the IPTV cable alternative," Georgia Law Review, Fall 2007, pp.227-269, 2007.
- [21] D. Furtado, "Television : Peer-To-Peer's Next Challenger," Duke Law & Technology Review, Vol.7, pp.1-50, 2005(3).
- [22] J. David, "Does Grokster Create a new cause of action that could implicate the Apple TV?," 17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pp.1197-239, 2007.
- [23] M. Madison, "Rewriting Fair Use and the Future of Copyright Reform," Cardozo A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23, pp.391-418, 2005.
- [24] E. Notkin, "Television Remixed: the Controversy over Commercial-Skipping,"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16, Spring 2006, pp.899-938, 2006.
- [25] A. Hurowitz, "Copyright in the New Millennium : Is the Case against ReplayTV a New Betamax for the Digital Age?," CommLaw Conspectus, Vol.11, pp.145-163, 2003.

- [26] P. Menell and D. Nimmer, "Legal Realism in Action: Indirect Copyright Liability's Continuing Tort Framework and Sony's De Facto Demise," *UCLA Law Review*, Vol.55, pp.143-204, 2007.
- [27] M. Scherb, "Free Content's Future: Advertising, Technology, and Copyright,"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98, No.4, pp.1787-1823, 2004.
- [28] 조연하, 김미라, "공정 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0권, 제4호, pp.302-336, 2006.
- [29] 조연하,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 사적복제 및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pp.328-353, 2006.
- [30] K. Lemley, "The Innovative Medium Defense: A Doctrine to Promote the Multiple Goals of Copyright in the Wake of Advancing Digital Technologies," *Pennsylvania State Law Review*, Vol.110, pp.111-162, 2005.
- [31] 이숙연, "원격 방송프로그램 녹화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정보법학*, 제13권, 제2호, pp.205-232, 2009.
- [32] 최진원,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인터넷법률*, 제43호, pp.84-114, 2008.
- [33] 최진원, "엔스크린서비스의 법적 문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적재산연구*, 제6권, 제4호, pp.97-132, 2011.
- [34] <http://wiclaw.com/2009/07/01/who-makes-the-copy>
- [35] 이영주, 임소혜, "N 스크린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동기와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99-108, 2013.
- [36] C. Walker, "A La Carte Television: A Solution To Online Piracy?," *20 CommLaw Conspectus*, pp.471-494, 2011.

저 자 소 개

조 연 하(Youn-Ha Cho)

정회원



- 197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 어영문학(학사)
 - 198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 200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관심분야> : 언론법제, 미디어정책, 미디어교육